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박기열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,
-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구체적으로는

안 제4조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시 지원금을 취소 또는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